경영·기술표준

골판지포장산업 사내표준화
〈규격 · 공정도 · 작업표준 · 설비관리〉 ①
자료제공 : 골판지포장 · 물류지 편집실

제 품 규 격
(외부포장용 골판지)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골판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골판지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골판지의 품질기준

종 류		기 호	파열강도(kPa)[1] kgf/cm²	수직압축강도 KN/m kgf/50mm			수 분[2] (%)
				A 골	B 골	C 골	
양면 골판지	1종	S-1	638 {6.5} 이상	3.41 {17.4} 이상	3.30 {6.8} 이상	3.35 {17.1} 이상	10.0 ± 2.0
	2종	S-2	785 {8.0} 이상	3.53 {18.0} 이상	3.43 {17.5} 이상	3.47 {17.7} 이상	
	3종	S-3	11.77 {12.0} 이상	5.12 {26.1} 이상	4.98 {25.4} 이상	5.04 {25.7} 이상	
	4종	S-4	15.70 {16.0} 이상	7.14 {36.4} 이상	6.98 {35.6} 이상	7.06 {36.0} 이상	
				A B골		B C 골	
2중양면 골판지	1종	D-1	785 {8.0} 이상	4.98 {25.4} 이상		4.94 {25.2} 이상	
	2종	D-2	981 {10.0} 이상	5.55 {28.3} 이상		5.49 {28.0} 이상	
	3종	D-3	1373 {14.0} 이상	7.41 {37.8} 이상		7.34 {37.4} 이상	
	4종	D-4	1766 {18.0} 이상	9.06 {46.2} 이상		8.96 {45.7} 이상	

단, (1) 파열강도는 건상 파열강도를 말한다.
(2) 수분은 골판지를 절단한 후 30~60분이 경과했을 때의 수분으로 한다.

3. 재 료

3.1 라이너

라이너 ○○○ D 101(골판지용 라이너)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2 골심지

골심지는 원재료규격(골심지)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3 접착제

접착제는 부재료(전분)에 적합한 것으로 제조된 전분 접착제를 사용한다.

4. 모양치수

4.1 골판지

골의 종류는 A, B, C 및 E골 4종으로 분류하여 A골은 30cm당 36±3, B골은 30cm당 51±3, C골은 ○±○ 골로 한다.

4.2 골판지의 폭과 길이는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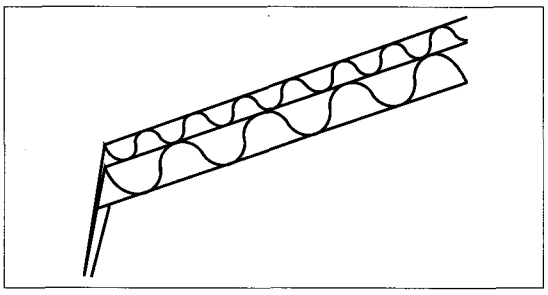

(2중양면 골판지 및 A, B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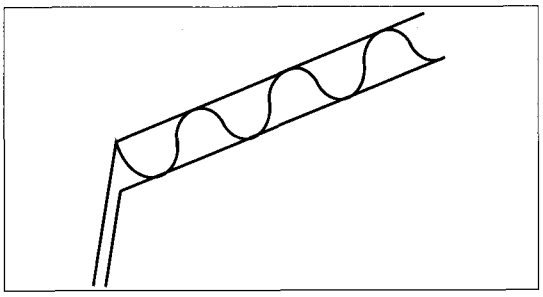

(양면골판지 및 A골)

4.3 (2중양면 골판지 및 A, B골) (양면골판지 및 A골)

5. 품 질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불량, 오손, 흠 등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고 2항의 종류에 적합해야 한다.

6. 검 사

검사는 제품검사규격(외부포장용 골판지) 규격에 준하여 행한다.

7. 표 시

7.1 골판지가 외부에 판매출하 될 때에 한하여 다음 사항을 포장표면에 표시한다.

(1) 제품명
(2) 종류
(3) 골의 종류
(4) 치수(장×폭)
(5) 제조 년월일
(6) 회상명 또는 약호

7.2 포장 및 표시에 관하여는 포장 및 표시규격에 준한다.

제 품 규 격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이하 골판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골판지상자의 종류는 사용하는 골판지의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포장제한

종 류		기 호	사용하는 골판지	포장제한(1)	
				최대 총 무게 (kg) (2)	최대 안쪽 치수cm (3)
양면 골판지 상 자	1종	CS-1	양면골판지 1종	10	120
	2종	CS-2	양면골판지 2종	20	150
	3종	CS-3	양면골판지 3종	30	175
	4종	CS-4	양면골판지 4종	40	200
2중양면 골판지상자	1종	CD-1	2중 양면골판지 1종	20	150
	2종	CD-2	2중 양면골판지 2종	30	175
	3종	CD-3	2중 양면골판지 3종	40	200
	4종	CD-4	2중 양면골판지 4종	50	250

주) (1) 포장제한은 KS A 1003 (골판지상자의 형식)의 0201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최대 총무게는 내용상품중량과 포장자중의 합계를 말한다.
(3) 최대 안쪽 치수는 길이, 나비 및 깊이의 안쪽 치수 합의 최대치를 표시한다.
(4)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수출용 골판지상자의 포장제한은 표 1과 동일하며, 일반수출용 골판지상자의 포장제한은 표 1의 포장제한 조건에 맞는 종류의 1단계 상위 종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3.1 골판지는 제품규격(외부포장용 골판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2 접착제를 접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붙인곳이 박리되지 않는 접착강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3 평철사는 부재료 규격(평철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형 식

골판지상자의 형식은 KS A 1003(골판지 상자의 형식)의 0201형(그림 1 참조)을 기본형으로 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들의 변형을 사용한다.

단, 표 1의 포장제한은 0201형(종래의 A1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1〉 골판지상자의 기본형식(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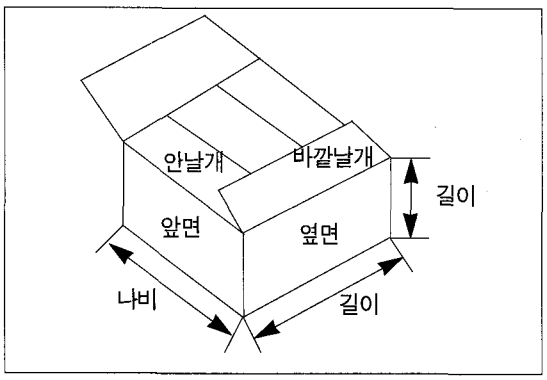

5. 구 조

5.1 각 면

상자를 구성하는 가면 전체의 자른 부분 및 꺾은 부분은 서로 직각이어야 한다. 다만 변형된 상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자를 형성하였을 때 괴선 또는 골판지의 표면에 파손이 생기거나 자른 부분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5.2 접 합

상자의 접합은 평철사또는 접착재로 겹붙인다. 겹붙일 때는 겹치는 부분의 폭은 양면 ○○mm이상, 이중양면은 ○○mm-○○mm로 하고, 평철사의 간격은 ○○mm 이내로 한다. 또한 상자의 위 아래의 꺾은선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평철사끝 까지의 거리는 ○○mm 이내로 한다.

6. 치 수

골판지상자의 치수는 안치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바깥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길이, 폭, 높이의 허용치는 수요자와의 협정에 의하여 양면은 ±○mm, 이중양면은 ±○mm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허용차는 양면 골판지상자는 ±3mm, 이중양면 골판지상자는 ±5mm로 한다.

7. 품 질

골판지상자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불량, 비틀림, 흠 등의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단, 압축강도는 수요자와의 협정에 따른다.

8. 시 험

압축시험은 KS A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방법)에 따른다.

9. 검 사

제품검사규격(골판지상자) 규격에 의한다.

10. 표시

10.1 골판지상자에는 적당한 곳에 아래 사항을 표시한다.

(1) 골판지의 종류 및 포장제한

(2) 포장강도

(3) 회사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 년월일

10.2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표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원 재 료 규 격
(골판지용골심지)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골판지용 라이너(이하 라이너 및 골심지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2.1 라이너의 종류는 KK, KA, KB, KC 4급의 4종으로 한다. 〔표 2〕 라이너의 품질기준

2.2 골심의 종류는 A, B, C 3급의 3종으로 한다. 〔표3〕 골심지의 품질 기준

3. 품 질

라이너의 품질은 균일하고 파열, 얼룩, 구멍, 오손 등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하며, 전 2항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4. 형상 및 치수

4.1 라이너의 형상은 두루마리(로울)로 하고, 이은곳은

〔표 2〕 라이너의 품질기준

종류 급	종류 평량 g/m²	평량 허용차 (%)	압축강도 (가로) N·m²/g kgf/cm²·m²/g	비압축강도 (가로) N·m²/g kgf/cm²·m²/g	파열강도 kPa·kgf/cm²	비파열강도 kPa·m²/g kgf/cm²·m²/g	수분 (%)
KK	175	±4	258 (26.3) 이상	147 (15) 이상	569 (5.8) 이상	324 (3.3) 이상	7.5±1.5
	200		294 (30.0) 이상		647 (6.6) 이상		
	225		332 (33.8) 이상		726 (7.54) 이상		
	250		392 (40.0) 이상	157 (16) 이상	814 (8.3) 이상		
	275		432 (44.0) 이상		893 (9.1) 이상		
	300		471 (48.0) 이상		971 (9.9) 이상		
KA	180		247 (25.2) 이상	137 (14) 이상	510 (5.2) 이상	284 (2.9) 이상	
	210		288 (29.4) 이상		598 (6.1) 이상		
	240		353 (36.0) 이상	147 (15) 이상	706 (7.2) 이상	294 (3.0) 이상	
	300		441 (45.0) 이상		883 (9.0) 이상		
KB	160		204 (20.8) 이상	127 (13) 이상	422 (4.3) 이상	265 (2.7) 이상	
	180		229 (23.4) 이상		481 (4.9) 이상		
	200		255 (26.0) 이상		530 (5.4) 이상		
	240		306 (31.2) 이상		638 (6.5) 이상		
KC	160		173 (17.6) 이상	108 (11) 이상	314 (3.2) 이상	196 (2.0) 이상	
	180		194 (19.8) 이상		353 (3.6) 이상		
	200		216 (22.0) 이상		392 (4.0) 이상		
	220		237 (24.2) 이상		432 (4.4) 이상		

주) 수분은 릴에 감을 때의 수분으로 한다.

〔표 3〕 골심지의 품질기준

종류 급	종류 평량 g/m²	평량 허용차 (%)	두께 mm	열단장 (세로) (km)	압축강도 (가로) N(kgf)	비압축강도 (가로) N·m²/g kgf/cm²·m²/g	수분 (%)
A	110	±4	0.18~0.22	4.0이상	119 (12.1) 이상	108 (11) 이상	8.0 ± 1.5
	120		0.20~0.24		129 (13.2) 이상		
	140		0.23~0.28		151 (15.4) 이상		
	160		0.26~0.31		204 (20.8) 이상	127 (13) 이상	
	180		0.29~0.34		229 (23.4) 이상		
	200		0.31~0.37		255 (26.0) 이상		
B	110		0.18~0.22	3.5이상	97 (9.9) 이상	88 (9) 이상	
	120		0.20~0.24		106 (10.8) 이상		
	140		0.23~0.28		123 (12.6) 이상		
	160		0.26~0.31		173 (17.6) 이상	108 (11) 이상	
	180		0.29~0.34		194 (19.8) 이상		
	200		0.31~0.37		216 (22.0) 이상		
C	110		0.18~0.22	3.0이상	75 (7.7) 이상	69 (7) 이상	
	120		0.20~0.24		82 (8.4) 이상		
	140		0.23~0.28		96 (9.8) 이상		
	160		0.26~0.31		141 (14.4) 이상	88 (9) 이상	
	180		0.29~0.34		159 (16.2) 이상		
	200		0.31~0.37		176 (18.0) 이상		

주) 수분은 릴에 감을 때의 수분으로 한다.

접착제 또는 검테이프 등으로 폭 ○○mm이상을 강력히 접착시켜 그 부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2 롤당 이음수는 ○개 이내이어야 한다.

4.3 권심의 코어는 원지사용후에도 원형이 유지되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양측 권심구는 철제 코어링이 부착되어야 한다.

4.4 지폭은 생산지시서에 의하고 원지의 길이는 제지공장 편의에 의한다.

단, 지폭의 허용치는 ±50 mm로 한다.

5. 검 사

검사는 원자재 수입검사 규정(골판지 라이너 및 골심지 수입검사 규정)에 의한다.

6. 포장 및 표시

포장은 두루마리마다 하고, 그 방법은 수송조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정한다.

두루마리의 직경은 ○.○mm 이내로 하고, 둘레를 철대 혹은 PP밴드로 결속하며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아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1 종류의 기호

6.2 지폭

6.3 중량

6.4 평량

6.5 제조번호

6.6 이음수

6.7 제조회사명

단, (1) 자가 생산품에 대하여는 제조회사명을 생략한다.

(2) 공장장의 승인아래 상기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재 료 규 격 (전 분)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의 접착제 제조에 필요한 전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2.1 고구마 전분

2.2 소맥전분

2.3 감자전분

2.4 콘스타치

3. 품 질

전분의 품질은 〈표 1〉에 해당한 것이어야 한다.

〈표 1〉

항 목	수 분	실 중 량	접착제제조시점도
범 위	○○% 이하	○○kg 이상	30sec 이상

단, 요드 반응에서 전분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검 사

검사는 부자재 수입검사 규정(전분)에 준한다.

5. 포 장

면대나 지대로 포장한다.

6. 표 시

실중량,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재 료 규 격 (가 성 소 다)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 제조에 필요한 접착제에 사용되는 가성소다(NaOH)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가성소다의 순도는 고체의 경우 98%, 액체의 경우는 45%이상이어야 한다.

3. 검 사

검사는 부재료 수입검사규정(가성소다)에 준한다.

4. 표시 및 포장

견고한 드럼 혹은 관에 포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4.1 순 도

4.2 실중량

4.3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4.4 품명

부 재 료 규 격 (내수접착제용 수지)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시 내수접착제로 사용하는 내수접착용 수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2.1 내수성

시험한 시편을 ○○℃의 물에 ○○시간 담구었을 때 자연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2 고형분

고형분이 ○○% 이상이어야 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내수접착제용 수지) 규격에 준한다.

4. 포장 및 표시

견고한 드럼 혹은 관에 포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4.1 품명

4.2 실중량

4.3 제조업자 또는 그 약호

부 재 료 규 격 (고무판 또는 수지판)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에 사용하는 고무판또는 수지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2.1 경도

경도는 1호 ○○±○° 2호 ○○±○°이어야 한다.

2.2 두께

두께는 ○○±○.○mm내에 있어야 한다.

3. 검사

검사는 ○○○ F 205(고무판)에 준한다.

4. 표시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4.1 경도

4.2 두께

4.3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부 재 료 규 격 (인 쇄 잉 크)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의 인쇄에 사용하는 인쇄잉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2.1 색채

현품과 색채견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어야 한다.

2.2 건조도

가로×세로(○○×○○cm) ○○○cm^2 골판지표면에 ○g의 잉크를 고르게 도포했을 때 건조시간은 ○~○시간내에 있어야 한다.

2.3 번짐성

번짐성은 ○.○mm 이하에 있어야 한다.

2.4 변질성

인쇄잉크는 여름에는 ○시간, 봄, 가을은 ○시간, 겨울은 ○시간 이내에 일광하에서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인쇄잉크)에 준한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1kg-2kg 또는 10kg 단위로 포장해야 한다.

4.2 표시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색채명

(2) 중량

(3)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

부 재 료 규 격 (플라스틱 끈)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외부포장용 골판지 또는 골판지상자를 결속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 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2.1 기계용

(1) 폭 : ○○~○○mm이내일 것

(2) 인장강도 : ○kgf이상일 것

(3) 신장율 : ○○% 이하일 것

(4) 두께 : ○.○○~○.○○mm이내일 것

2.2 수작업용

(1) 인장강도 : ○○kg 이상일 것

(2) 신장율 : ○○% 이하일 것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플라스틱끈) 규격에 준한다.

4. 포 장

두루마리로 하여야 하며 ○○개를 한 뭉치로 결속하여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골판지 용 라이너)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에 사용하는 골판지 라이너 원지를 발주할 때 또는 자가공장에 생산 지시할 때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원재료 규격(골판지용 라이너 원지)의 규격에 준한다.

3. 포장조건

라이너의 두루마리 양쪽에 철대 또는 PP밴드로 결속하여야 한다.

4. 수송조건

운송중 수침하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5. 수입조건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의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검 사

6.1 검사는 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6.2 골판지용 라이너 수입검사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7. 표 시

골판지용 라이너 수입검사기준

구 분	검 사 항 목	품 질 기 준	표준미달조치	
			감가	반품
라이너 골심지 공통항목	1. 표시평량	g/m^2 단, 허용차는 ± 5%		
	2. 수분(%)	라이너 : 7.5±1.5% 골심지 : 9±1% 단, 리일 권추시의 수분		
	3. 지폭(mm)	폭 mm, 단, 허용차는 ±5		
	4. 원지롤 길이(m)	라이너 : 1롤당 3,000m		
	5. 이 음 수 이음상태 이음표시	이음수는 1롤당 2개소이내로 하고, 이은 곳은 폭 50mm 이상의 감테이프 등으로 접착하되, 그 곳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6. 코어의 구조	코어는 원지사용후에도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양측 권심구는 철재 코어링을 부착하여야 한다.		
	7. 로울 상태	롤상태는 반드시 와인딩 되어야 하며, 감긴 상태가 균일밀착 되어야 한다.		
	8. 파열 · 얼룩 구멍 · 오염 이물질혼입 상태 등	사용상 해로운 흠점이 없어야 하며, 특히 묵지 · 비닐 · 모래등 이물질의 혼입이 없어야 하고 회분함유량은 ×%이내로 한다.		
라이너 특유사항	파열강도(kfg/cm2)	제시기준		
골심지특유사항	링크러쉬 열단장(km)	제시기준 제시기준		

원재료규격(골판지 라이나 원지의 6항 포장 및 표시에 따른다.

구 매 시 방 서
(골 심 지)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의 중심에 사용하는 골심지를 발주할 때 또는 자가공장에서 생산할 때에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원재료규격(골심지)의 규격에 따른다.

3. 포장조건

골심지의 양쪽애 철대 또는 PP밴드로 결속하여야 한다.

4. 수송조건

수송중 수침하거나 오염 또는 두루마리가 손상되어어는 안된다.

5. 수입조건

5.1 감시(수입검사)후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5.2 불합격품은 반품한다.

6. 검 사

6.1 검사는 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6.2 골판지용라이너 수입검사기준과 같다.

7. 포장 및 표시

원재료규격(골판지 라이너)의 6항 포장 및 표시에 따른다.

구 매 시 방 서 (전 분)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제조에 사용되는 전분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규격(전분) 규격에 준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4. 수입조건

4.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4.2 불합격품은 반품조치 한다.

4.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시

외표면에는 중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가성소다)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 제조에 사용하는 접착제 제조에 필요한 가성소다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규격(가성소다) 규정에 준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가성소다) 규격에 의하여 행한다.

4. 수입조건

4.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4.2 불합격품은 반품조치 한다.

4.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표 시

순도중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내수접착용 수지)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내수접착용 수지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규격(내수접착용 수지) 규격에 준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내수접착용 수지)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4. 수입조건

4.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4.2 불합격품은 반품조치 한다.

4.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포장조건

견고한 드럼 혹은 관에 포장되어야 한다.

6. 표 시

외표면에 중량,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고무판 또는 수지판)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의 인쇄에 필요한 고무판 또는 수지판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 규격(고무판) 규격에 준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고무판) 규격에 의하여 행한다.

4. 수입조건

4.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4.2 불합격품은 반품 조치한다.

4.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표 시

우 하단에 경도, 두께,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인 쇄 잉 크)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인쇄잉크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규격(인쇄잉크) 규격에 준한다.

3. 포장조건

1kg~2kg 또는 ○○kg 등 kg단위로 포장해여 한다.

4. 수송조건

수송중 충격으로 인하여 관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5.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인쇄잉크) 규격에 의하여 행한다.

6. 수입조건

6.1 합격품은 창고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6.2 불합격품은 반품 조치한다.

6.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7. 표 시

색채명, 품질안전기간, 제조회상명, 제조 년월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평 철 사)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골판지상자의 접합재료로 사용하는 평철사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 규격(평철사) 규격에 준한다.

3. 포장조건

포장은 ○~○ 두루마리마다 종이로서 포장하여야 한다.

4.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평철사) 규격에 의하여 행한다.

5. 수입조건

5.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5.2 불합격품은 반품 조치한다.

5.3 공장장은 필요시 수입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표 시

외표면에 mm 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 매 시 방 서 (플라스틱 끈)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포장용 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끈의 구매시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 질

품질은 부재료규격(플라스틱 끈) 규격에 준한다.

3. 검 사

검사는 수입검사규정(플라스틱 끈)규격에 의하여 행한다.

4. 수입조건

4.1 합격품은 창고관리규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4.2 불합격품은 반품 조치한다.

4.3 공장장은 필요시에 수입품에 대한 분석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표 시

표면에 제조자명, 제조번호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검 사 업 무
(검사업무규정)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한 업무와 수입 · 중간 · 제품검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2. 검사의 정의 및 목적

2.1 정의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양호 불량,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2 목적

제품의 품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의 불량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 대하여 신뢰와 신용도를 증진시킴에 목적이 있다.

3. 검사의 구분

3.1 수입검사

제출된 개개의 물품 또는 물품의 로트를 받아 들여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3.2 중간검사

공장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가공된 제품 (또는 부품)을 어떤 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이동해도 좋은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중간검사 항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는 제외한다.

3.4 재고검사

장기보관의 원 · 부자재, 반제품 및 완재품에 대한 재고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4. 검사업무

검사업무는 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에 의해 품질관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설비 및 시설재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5. 검사부서의 독립

검사 담당부서는 구매나 생산부서 등의 타부서로 부터 독립된 위치여야 한다.

6. 검사원의 권한 및 책임

6.1 검사원은 직속상사 이외로부터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6.2 검사원은 검사시 관계규정에 의거 공정의 정확을 기하여 자기가 검사 기록한 판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6.3 검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감독자의 소속과장이 진다.

7. 검사원의 자격

검사에 관계되는 제반업무에 표1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장장이 지명하는 검사원이 담당하며, 검사원별 검사소관 품목은 별도로 정 한다.

〔 표 1 〕 검사원의 자격

검사소관별	학 력	경 력	비 고
수입검사품목중 주요원부자재	고졸이상	시험 및 검사부문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품질관리과 요원
수입검사 기계류, 부속품류, 공구류	고졸이상	생산분야 및 공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품질관리과 요원
수입검사 품목중 기타 일반용도품	고졸이상	물품사용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물품사용부서 요원
중간 · 제품검사	고졸이상	생산분야 또는 검사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품질관리과 요원

8. 검사원의 일반적 교양사항

8.1 검사작업은 정확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8.2 사람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적인 처신에 유의하여 한다.

8.3 검사에 관한 개선 제안에 노력한다.

8.4 통계적 수법의 지식향상에 노력한다.

8.5 검사 작업을 교체할 때는 작업내용 주의사항을 인계한다.

8.6 반제품, 완성품을 취급하는 경우, 질서 정연히 보관 또는 적재된 것을 난잡하게 취급하지 않고 오염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 속)